

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(안)

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(조례 278호, 1968. 2. 15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과 종전 조례에 의한 충청북도도민교육원의 업무와 시설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 이를 승계한다.